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,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,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,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※ 발주자별(8) 부호코드란 중 “42: 교육부”를 “42: 과학기술정보통신부”로, “43: 과학기술정보통신부”를 “43: 교육부”로,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, “환경부”를 “기후환경에너지부”로 한다.

제2조(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9호가목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각각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문화기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”를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”로, “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국토교통부”를 “산업통상부, 보건복지부, 기후환경에너지부, 고용노동부, 성평등가족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 체계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	제3조(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 체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기획재정부, <u>교육부</u> ,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u> , <u>외교부</u> , <u>통일부</u> , <u>행정안전부</u> , <u>농림축산식품부</u> ,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, <u>보건복지부</u> , <u>환경부</u> , <u>고용노동부</u> , <u>여성가족부</u> , <u>국토교통부</u> , <u>국가유산청</u>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	1. -----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u> , <u>교육부</u> ----- ----- -- <u>산업통상부</u> , <u>보건복지부</u> , <u>기후환경에너지부</u> , <u>고용노동부</u> , <u>성평등가족부</u> , <u>국토교통부</u> , <u>해양수산부</u>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